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71호의8서식] (2022.03.18. 개정)

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

(앞 쪽)

관리번호		처리기간 즉시

❶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 기본사항

인적 사항	① 상 호 (법 인 명)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성 명 (대 표 자)	④ 전 화 번 호
	⑤ 사업장(조합)소재지	

법인 구분	⑥ 합명회사	⑦ 합자회사	⑧ 법무법인 법무조합	⑨ 특허법인	⑩ 노무법인	⑪ 법무사 합동법인	⑫ 법무법인 (유한)	⑬ 회계법인	⑭ 세무법인	⑮ 관세법인	⑯ 조 합	⑰ 익명조합	⑱ 합자조합

❷ 동업기업이 지급받은 배당액 현황

배당액 지급법인	⑲법 인 명		⑳사업자등록번호	

배당액 현황	㉑배당받은 날짜	㉒배당받은 금액	㉑배당받은 날짜	㉒배당받은 금액
	배당받은 금액 합계			

❸ 동업자 명세 및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의 전부과세 여부

동 업 자			㉖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부과세 여부	
㉓성명 (법인명)	㉔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㉕주소(소재지)		
			여	부
			여	부
			여	부
			여	부
			여	부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6조의3제9항 단서 및 제120조의4제3항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확인서 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 성 방 법

1. 이 서식은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 및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'지급배당 소득공제신청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1호의2서식)'의 첨부서류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.

2. 「법인세법」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 및 「법인세법」제75조의14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(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기업)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(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)까지 이 서식을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3. ⑲ · ⑳번란에는 동업기업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4. ㉑ · ㉒란에는 동업기업이 유동화전문회사 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배당액과 배당액을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.

5. ㉓ · ㉔ · ㉕란에는 동업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동업자(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)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
6. ㉖란에는 동업기업의 각 동업자가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"여"란에 "○"표하고, 그 외의 경우에는 "부"란에 "○"표 합니다.